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[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]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조(목적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추가 약정에 의해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주택에 각각 주민등록 유지(이하 '거주', 신규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 포함) 및 이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유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조(목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60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과 신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채무자는 전입(예정)시기 및 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주택에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</p>	<p>제2조(대상 주택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0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,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</p>	<p>제3조(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)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제2조 제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2조 제2항 신규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,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</p>	<p>----- 60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(예정)자가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인 경우,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으면 제2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2항의 주택을 처분(명의 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	<p>제4조(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60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